



〈25週年記念〉

技術士 制度의 變遷略史

A Short History of the System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s

鄭 炳 琡*
Chung, Byung Sook

1990년이 되는今年에 技術士會는 創立 25週年을 맞이하게 되고 變遷한 이 期間을 3段階로 크게 나누어 본다. 1段階는 60年代의 일로 技術士法制定과 關聯해서 初創期로 하고, 2段階는 韓日間의 技術士交流와 技術用役育成法の 制定 및 國家技術資格法の 法制化를 이룩한 70年代에 일어난 變遷을 中心해서 中盤期로 했다.

3段階는 80年代를 접어들면서 初創期와 中盤期에서 變遷된 狀況들에 따라 後遺症등이 나타남으로 因한 補強對策 등이 일어난 事實을 엮어본다. 制限된 紙面의 事情상 너무 簡略하게 되었거나 不足한 점이 있을 것임으로 이를 諒解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1. 初創期(1963~1970年)

가. 技術士法の 制定과 第1回 技術士의 誕生
60年初에 우리나라의 情勢는 先進國들의 業績을 본받아 在來的인 社會相을 벗어나 近代化過程을 밟아야하고 經濟的인 自立國家로 發展하기 위해서는 技術革新化는 必然的인 하나의 수단이고 方法이었던 것이다. 즉 이나라의 將來에 繁榮있기를 企圖하면서 1963年 11월에 法律 第1442號로 技術士法이 制定되었다. 1964년에는 13個科學技術部門中에서 農業, 電氣, 機械, 化工, 纖維, 金屬, 鑛業, 航空, 建設, 應用理學의 各部門에서 67名인 第1回 技術士를 合格 誕生시키면서 靑瓦臺를 禮訪하는 祝賀行사가 있었다.

나. 韓國技術士會의 設立

第1回 技術士를 輩出하게 되었음으로 1965年 2月 16日에, 당시 東崇洞에 있었던 國立工業研究所에서 42名이 參席한 가운데 韓國技術士會를 技術士法 第32條에 의해서 創立하게 된 것이며 初代會長으로는 金海琳 技術士를 選出하게 되었다.

同年 3月 15日에 經濟企劃院長官으로부터 設立 認可를 받았고, 66年 1月 29日에 第2回 定期總會를 土木會館에서 開催하였고 第3回は 67年 2月 18日에 建設會館에서 81名이 參加한 가운데 開催했다. 이때 特히 「技術士와 技術用役」 關係를 큰 題目으로한 講演會가 있었으며 우리들의 關心을 크게 끌게 하였다.

① 韓國의 技術用役制度……朱源 先生

② 經濟開發과 技術用役……宋仁相 先生

이때가 第3回 技術士를 輩出하면서 總人員數가 164名으로 構成되고 있었으며 技術士들의 技術用役 遂行에 關한 問題가 한층 더 높이 學論되기 시작한 때였다.

다. 技術士 活用

技術士法 第25條에는 技術士의 活用に 關한 條文으로 되어 있어, 經濟企劃院長官은 專門的인 技術이 필요한 業務를 指定하여 技術士를 活用할 수 있게 하였으며, 特히 다음과 같은 事業에 積極

*生産管理技術士(工場管理) · (社)韓國技術士會 副會長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 ① 國家·公共團體 및 政府管理企業體가 營爲 하는 主要한 事業
- ② 長期經濟開發事業
- ③ 外資導入事業중 主要한 事業
- ④ 기타 특히 主要한 公益事業

이와 같은 法的 活用條項을 이행하는 정부 施策 상의 效果面에서 보면, 이때 技術士들은 대부분 이 公共 또는 私業體에서의 要職에 있었거나, 大學 教授들이었기 때문에 技術士들의 身上에 큰 變動은 없었으나, 小數人員에게만 要職移動이 있었다. 또 3項의 外資導入事業중 事業着手전에 事業承認을 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技術士들에 의한 技術性에 관한 事業妥當性 檢討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67年 이후 몇年間은 技術士들이 活潑하게 活動할 수 있었던 時期였었다.

다만 纖維工業, 化學工業, 機械工業 및 其他事業에 관한 外資導入事業이 全盛期였기 때문에 이와 關聯된 技術士들의 活用度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評價해야만 하였다.(外資導入事業, 技術檢討에 關한 技術用役者管理規程, 1966. 9. 22 經濟企劃院告示 第24號)

이와 같은 趨勢가 모든 技術事業에 擴散되어 오늘날까지 20余年동안 萬若에 持續되었다더라면 지금의 經濟性 事業의 結果는 그 內容에 있어 좀더 높은 次元의 것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科學技術에 관한 專門的인 最高의 人材라고 자랑하는 技術士의 數가 오늘의 5천여명뿐 아니라 2~3萬名이 輩出되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라. 技術士法 所管部處의 變更

經濟企劃院內에서의 技術管理局을 中心으로 해서 오늘의 科學技術處가 單獨 行政機關으로 分離되어 새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技術士法도 1967年 3月 30日부(法 1950號)로 經濟企劃院長官 所管이던 것이 科學技術處長官으로 變更되었다.

이 時節만 해도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科學技術을 尊重하게 하는 行政機關으로서 獨立된 機能으로 誕生시키게 되었다고 크게 自負心들을 갖게

하고 國家經濟發展에 더욱 큰 寄與를 할 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되었다는 自祝과 社會的인 慶祝의 분위기였다. 특히 技術士를 中心한 科學技術의 振興을 圖謀할 수도 있겠다 하는 큰 期待感을 갖게도 한 것이었다.

마. 技術士會의 運營

67年의 第3回定期總會에서는 2代會長에 金海琳前會長이 連任되고 그간의 常任理事役을 金慶植, 李錫祐의 두 技術士가 맡아 왔고, 土木學會 事務局長이었던 閔丙甲氏가 兼해서 技術士會 事務局長을 맡아 受苦하면서, 明洞2街 5-5에 있었던 土木會館 2層事務室에 設置되었다.

3回總會가 끝난후 첫번 理事會에서 鄭炳珮 技術士가 常任理事로 選出되고 年間豫算은 會員 1人當 年會費 3,000원으로 總員 164名에서 入金될 수 있는 總 492,000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事務職員(局長代理) 1名을 月俸 3萬원으로 採用하는 일이 고작이었으며 이 職務를 安봉호氏가 맡아 주어 겨우 2層事務室 入口에 技術士會 事務室 冊床 1個를 配置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해인 68년에는 오늘의 「技術士」會誌를 創刊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나마도 資金調達하기 위해서 國庫補助를 받기 위해 東西로 奔走했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事務職員外는 無給奉仕의 傳統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의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設立되면서 故 金允基(前職長官) 會長과 金海琳副會長이 本會會長을 兼하고 있어 科學技術關係의 團體나 學會 등을 한곳으로 모아야할 會館建立의 필요성 이 高調된 당시의 事情이 있어 지금의 科技總會館 자리까지 物色이 되었다.

따라서 技術士會도 事務室을 永久確保하기 위해서 69年 7月 3日에 坪當基金 4萬원씩 해서 25坪(오늘의 本會事務室)을 總額 100萬원으로 하고 먼저 3萬원의 契約金을 支拂했다. 이나마도 資金不足으로 75년까지 殘額 支拂을 못하고 坪當 9萬원으로 올랐으며 利子金額까지 加算되었다.

平生會費制를 만들어 據出되는 資金으로 76年 3月에야 2,059,640원을 支拂하고 오늘의 事務

室을 確保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는 3代 事務局長으로 文盛泰氏가 수고 했고 常任理事는 계속 連任하면서 會務가 多少 순조롭게 進行되어 나갔다.

2. 中盤期(1971~1980年)

가. 技術士 活用の 受難期

60年 末期에서 70年初에 접어들 때까지 技術士에 관한 커다란 受難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科學技術處가 出帆한 68年 무렵까지만 해도 外資 導入技術(事業) 妥當性 檢討事務에 參與할 뿐만 아니라 極少數이기는 했지만, 公共職에서 昇進되거나, 技術士로서의 手當을 받게도 되고, 重用발탁이 되는 일과 같은 事例가 있었다. 이와같은 活用상태는 잠시동안에 불과했으며, 經濟企劃院에서도 法の 管掌이 科技處로 옮겨지고해서 점점 技術士에 관해서 無關心해져갔다.

70년까지는 7回 技術士가 輩出되고 總 245名에 이르게 되었으나 뚜렷한 技術士業務에 관한 活性化에 대한 그 對策이 全혀 없었기 때문에 技術士들의 應試者數도 점점 減少되고 登錄資格의 價値에 關한 不滿이 점점 드높아진 것이다.

技術士가 되기 위해서는 平素의 實力도 필요하지만, 理工系大學을 卒業한 후 同一 技術部門에서 7年以上의 實務經歷이 있어야 하고, 8時間의 筆記試驗에 合格한 후 面接試驗을 거쳐야 하면서도 落榜이 되었을 때는 2~3번, 또는 6번까지도 도전해 많은 苦難끝에 얻은 資格들인 것이다.

나. 技術用役의 強化를 發想

技術士法 第4章 業務에서 第25條(技術士의 活用)는 이미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非活性條文化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技術用役을 建設部門을 中心으로 強化할 것을 發想하고 「技術用役報酬規程」도 制定하여(1969年 1月 1日부터 施行) 積極的으로 推進한 것이다.

이 規程은 오늘의 技術用役育成法에서 定하고 있는 「技術用役代價基準」의 母體이고 그 內容과

骨格은 同一한 것으로 된 것이다.

따라서 技術士法 第4章인 技術士 業務內容을 改善해서 技術用役으로 法改定하고 이를 強化할 것을 初案試圖를 했으나 當時의 法務關係官들의 意見은 方대한 內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別個의 獨立法으로 해야 한다는 意見이 支配的이었다.

다. 技術用役育成法の 助産과 誕生

技術用役育成法을 制定함으로써 技術士들의 活性化를 圖謀하고 이를 促求하기 위해서 大統領 이하 關係 全長官에게 早速制定을 위한 建議를 強力하게 展開한바 그 實效를 볼 수있게 된 것이다. 이때 技術士會의 實務的인 幹部들은 물론이지만 오늘의 金海琳顧問과 故人이신 當時의 技術士管理委員長이며, 國土開發技術士이신 李鳳寅氏 등 몇분의 元老級과 역시 故人이 되신 當時의 會長인 柳鐘(鑛業技術士)氏 등의 功勞는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當時 理事會에서 委囑한 法草案의 實務적측은 本會의 常任理事(鄭炳珪)와 科技處 實務擔當課長이었으며, 이때의 重要한 合議事項으로 法條文化된 것은 第2條의 定義이다. 즉 技術士法에 定한 第2條 定義와 똑같이 한 點이다. 다시 말하면 「技術士業務=技術用役」이라는 定義觀念이었던 것이다.

1973年 2月 5日(法律 2474)에 이 育成法이 制定公布를 보았고 그 定義를 보면

① 제2조(정의).....

1. 기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및 지도를 행하는 것,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技術士法에서 보면

第2條(定義) 이 법에서 「技術士」

라 함은 科學技術에 關한 高等의 專門知識과 實務經驗에 立脚한 應用能力을 要하는 事項에 關하여 이 법에 의한 資格을 얻은 者를 말한다.

……로 했으며

同施行令 제 2조(정의)에서는

“응용능력을 요하는 사항”이라 함은 과학기술에 관한 고등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및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말한다…로 되어 있었다.

技術用役育成法の 欠點이라고 보면 제 2조 2항에 “용역업이라 함은 전항의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라 한 것이다.

기술용역이 순수한 뜻으로 보면 “영업”의 개념이 아니라 技術(專門化)業이라 했어야 했던 것이다.

라. 韓日 技術士의 交流

1970年度에 日本技術士會에서 우리 技術士의 訪日要請이 있어 金慶植技術士(當時 科技處의 科學技術 審議官)의 訪日에 이어 1971年度에는 우리측의 招請으로 日本技術士 17名이 來訪하게 된 것이 本格的인 交流의 契機가 되었다. 特히, 韓日 技術士會 實務代表者間의 合議覺書로 ① 産業 및 經濟發展을 爲하여 兩國 技術士會는 携帶強化 ② 兩國技術士의 相互尊重과 共同發展 ③ 正當한 技術用役業務수행 地位의 強化 ④ 兩國 科學技術長官 會議에서 얻은 政策에 관한 協議 ⑤ 兩國 技術士會間의 親善과 資料交換을 위한 每年 交代 訪問, 이상과 같은 5個項이었으며, 當時의 實務責任者로 韓國측에서 常任理事 鄭炳珣과 지금은 故人이 되었지만 日本측에서 常務理事 高田一郎間에서 合議 署名이 되었다.

1990年을 맞이하는 금년까지 벌써 20회가 되는 記錄을 갖게 되어 他에 그 類例를 別로 볼 수 없는 長壽의 좋은 結實을 갖게 된 것이다.

마. 技術士 制度의 革新 問題

1970年代를 맞이하면서 技術士制度의 革新方案이 점차 심도있게 論議도 되고 活潑한 意見도 많아졌다. 그중에서 한가지 綜合化된 內容을 보면(技術士誌 VOL., NO9, 1970)

美國의 州單位 技術士數나 日本의 技術士數를

보면 1萬名 이상이 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고작 245名에 불과했기 때문에 技術士外로 技術士補를 1級, 2級, 3級으로 해서 그 數를 急速히 確保할 것을 提案한 바 있다.

바. 國家技術資格法

① 資格法 制定의 背景

이미 말한바와 같이 技術士외에 技術士補의 1級, 2級, 3級을 둘 것을 主張한 또한가지 原因은 各種 무차별 資格의 亂舞를 整理하는 것에 있었다. 이 무렵에는 各部處別로 무절제한 여러 가지 명칭이나 종류가 技師級으로나 오늘의 技能士級으로 마구 發給되었기 때문에 各種資格이 亂舞되어 社會的인 混屯에 빠져들었다. 따라서 技術士의 位置自體가 技師나 技能士級에 해당되는 정도로까지 渦流속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예를 몇가지 들자면 전기통신법에 의해서 1급, 2급, 3급 유선기술사가 있었고(지금은 유선 설비 기사 1급, 2급), 일반적으로는 강습소 등에서 조리기술사, ○○기술사등 임의로 쓰이는 기술사 명칭이 수없이 발생되어 20여가지 이상을 시정요구한 바 있었던 것과 같은 혼란상이었다. 그러므로 이들 各種資格을 體系化시켜 整理할 필요성은 絶對的인 것이었다. 즉 學術系에서는 博士←碩士←學士와 같은 階層이 있듯이, 技術系로서는 技術士←技師1級←技師2級, 技能系로서는 技能長←技能士1級←技能士2級←技能士補와 같은 體系化 作業이 科學技術處에서 計劃되었으며, 드디어는 國家技術資格法이 1973年 12月 31日(法律 第2672號)에 制定公布가 된 것이다.

② 國家技術資格法

따라서 技術士法 第1章 總則에 있는 技術士定義는 資格法施行令의 14條에서 定하는 檢定의 基準에 吸收하고, 技術士法 第2章 登錄條文은 資格法第8條(登錄)에서, 技術士法 第3章 試驗은 資格法 第6, 7條의 檢定에서, 技術士法 第4章 業務중 第25條(技術士의 活用)은 資格法의 第10條(資格取得者의 優待)에서 技術士法 第5章 技術士管理委員會는 資格法施行令 第4條(委員會)에서 각각 吸收確保하게 되어 결국 技術士法

第6章 韓國技術士會(第32~34條)만 남게 되는 樣相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技術士法은 資格法이 公布된 다음날부터 6個月間(1974年 6月 30日)의 유효기간을 두고 廢止하기 에 이른 것이다.

이때 당시 技術士法 자체의 法內容을 改定하여 舊 技術士法을 存續시킬 것을 要請했지만 理事會와 行政當局에서는 뚜렷한 代案이나 反應이 없었지만, 新法인 國家技術資格法에서 欠陷이 發生될 때는 그 欠點을 補完하기로 했었으나, 技術士만을 위한 改定은 거의 不可能한 것으로 되고 말았다.

③ 技術士 人的 資源의 轉換

技術士는 當然히 技術士法에 의해서 第11회까지 試驗이 實施되었고 그 人員數는 總 1086名으로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技術士로서 同法 附則 第2條에 따라 法的根據가 轉換되었다.

또 한가지는 資格法施行令 附則 第4條(다른 法令에 의한 檢定에 대한 經過措置)에 따라 別表 10에서 建設業法에서 取得한 건설기술자감류의 (토목)(건축)(기계)를 각각 토목기술사(시공) 건축기술사(시공), 기계기술사(건설기계)로 그 名稱을 바꾸고 總 1016名이 建設部에서 科技處로 移轉되었다.

따라서 技術士 數는 舊 技術士法에 의한 技術士(各 技術分野) 1086名과, 建設業法에서 移管된 技術士(施工) 1016名을 合해서 그 總數가 2102名으로 增加되었다.

第12回 技術士 合格者부터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해서 輩出되었고 1990. 8 현재의 總數는 5,799名이 된다.

사. 技術士會의 運營

3~4代 會長 柳鐘(故人)에 뒤이어 5代에 李昌九會長, 6代에 林鳳鍵會長에 이어 7~8代(3代때 李獻卿會長으로 歷任되었으며 가장 큰 激變期(71~73. 3)에 技術用役育成法의 制定(73. 2. 5 法律 2474號)이 있고 이때 副會長(林鳳鍵, 羅允浩) 2名과 9名의 常任理事(鄭炳琮, 李昌九, 李在淑, 金慶植, 金仁圭, 黃海龍, 曹奎鍾, 李獻卿, 金瑋

會), 11名의 理事와 監事 2名으로 構成되었으며, 國家技術資格法의 胎動期이기도 했었다.

資格法의 制定(73. 12. 31 法律 2672號)이 된 4代는 李昌九會長과 副會長 2名(李獻卿, 張碩潤)과 常任理事 5名(鄭炳琮, 廉道有, 林鳳鍵, 許墳, 金仁圭) 및 19名의 理事와 監事 2名으로 構成되고 있었다.

5代(75. 3~77. 4)에는 林鳳鍵會長과 副會長에 廉道有(故人), 李瑣根의 2名이고 常任理事 11名(金慶植, 張建型, 李獻卿, 許墳, 李達雨, 金圭泰, 金瑋會, 李敦永, 鄭炳琮, 張哲植, 任紆鎬(故人))과 理事 14名 및 監事 2名이었다.

6~7代(75. 3~81. 3)는 李獻卿會長과 副會長에는 金圭泰, 張建型, 許墳(6代), 金瑋會(7代)이고, 常任理事에는 鄭炳琮이 歷任했으며, 理事는 21~29名과 監事 2名에 文盛泰 事務局長으로 구성하고 運營되었다.

財政面에서 보면 74年度의 決算額이 2,193,000 원이었고 75年度는 5,250,000 원의 豫算에 불과했다.

技術用役育成法의 制定에 따라 技術士를 中心한 用役業體의 登錄實況을 보면 74년에 綜合用役業이 5個, 專門用役業이 6個이고, 個人用役業이 42個로 총 53個였다. 1年후인 75년에는 專門用役業이 9個, 個人用役業이 60個로 늘어났고 總 74個業體數였으며, 認定技術士는 綜合用役業體에만 一部가 補充되고 있을뿐이었다. 이때만 해도 技術士會에서 定한 技術用役報酬規程을 適用 또는 參酌이 되고 있었다.

3. 近代期(1981~90)

가. 技術用役育成法으로 派生된 認定技術士 問題

이 法의 첫번째 改定이 76. 12. 31에 있었으나 別칙이 보강되었을 뿐 本文에는 別變化가 없었고, 시행령에 1977. 7. 16(會誌 VOL 10 NO: 3)에 改定이 있어 부칙 제2조(인정기술사)에서 “기술사만으로 充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전문 분야에 한해서 인정기술사를 인정하되 1981년

12월 31일까지로 時限하고 필요한 사항은 과기처장관이 정하기로 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會誌 VOL12, NO. 1)

① 改定公布당시 建設部門을 除外한 全 61個分野中 49個分野로 認定技術士를 둘 수 있게 했고

② 77.9(과기처 고시 제 18호)에서는 19個分野로 대폭 축소시켰다.

③ 79.1(과기처 고시 제 22호)에서는 27個分野로 擴大 실시케 한 바 있다.

技術用役報酬規程을 引用해서 1975. 4. 30. 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고시하고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나. 認定技術士를 高級技術者로 탈바꿈

81. 12. 31일까지 時限付로 했던 認定 技術士方法을 同日付로(대통령령 제 10657호) 82. 12. 31까지 1年間을 더 延長하다가 技術士會 및 相關 部處로부터 國家技術資格法에서 定하는 技術士名稱을 任意로 사용하는 違法性을 指彈받아 이 方法의 遲延을 中止할 것을 계속적으로 抗議받자 高級技術者라는 名稱으로 탈바꿈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① 1982. 8. 18(대통령령 제 10904호)에서 4차 부칙 3항(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로 개약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198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기술사가 아닌 고급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② 이 고급기술자로 개약한 시한인 84. 12. 31일이 다가오자, 84. 4. 7일에는 법령안을 입법 예고해서 종합용역업의 인력구성요건인 “기술사 10인 및 건축사 1인을 포함한 고급기술자 30인이상”을 “고급기술자 30인이상”으로, 또 전문용역업에서는 “기술사 2인이상”인 것을 “고급기술자 2인이상”으로 개약 시도되었으나 이를 反對하는 技術士會 臨時總會에서의 決意文(기술사誌 VOL17 NO2)의 採擇과 建議에 부딪혀 每 3年마다 연기하면서 오늘날인 90년까지 人力數에 改正없이 期限만을 되풀이 延期해 왔던 것이다.

다. 高級技術者로 代替하려는 再發想

과학기술처의 長官이 수시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를 맞춰서 빈번히 技術士들의 本來의 業務領域은 단순한 高級技術者라는 美名아래 侵蝕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또다시 1990. 6. 12일부로 技術用役育成法 施行令 改定案이 豫告되어 84年度와 同一한 樣相으로 改惡이 시도된 것이다. 즉 종합용역업체나 전문용역업체에서 技術士를 축출하고 高級技術者를 100% 代替할 수 있는 가능성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技術士會로서는 政策委員會와 理事會를 거쳐 7월 5일에는 臨時總會까지 發進 開催하고 이를 反對阻止하는 決意와 建議文을 採擇하고 과기처에 제출한바 있다.

라. 技術士法 復活 動機

國家技術資格法으로 바뀌진 背景이나 期待는 技術用役育成法의 制定으로 每年 數百名 이상을 輩出하는 技術士들의 士氣를 充足시키는데는 力不足의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는 技術士들의 部分的인 誠意가 不足한 것도 있지만 本據地가 되는 科技處의 行政力도 미흡한 感마저 技術士들에게 안겨주는 찬바람이 감돌고 있었다.

1980年度를 접어들면서 1980. 12. 1에 本會 技術士一同은 國務總理와 科技處長官에게 不滿을 建議하기에 이른 것이며(기술사 VOL13 NO4) 그 內容의 要約은

① 技術系列은 科技處主管法으로 고치고, 技能系列은 勞動廳主管法으로 할 것

② 技術士業務 및 活用に 關한 法을 制定하여 줄 것(技術士法 復活을 示唆)

③ 國家技術資格法 및 同施行令으로는 技術士法에서 明示되었던 技術士 定義가 法條文으로 明示할 수 없는 無力性

④ 技術用役育成法만으로는 技術士全員에게 活用될 수 없는 欠點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었

다.

마. 國家技術士法 立法에 관한 陳情

1986. 6월에 金慶植 會長과 4,458 명의 技術士 名義로 立法·行政 關係要路에 陳情文을 提示하기 到 來한 것이다.

主要한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要旨은 2,000年代를 向한 科學技術의 長期 目標 達成을 위해서는 技術士가 單一 專門技術士 法으로 再復歸되고 確固한 基盤을 構築해 나가야 國家經濟發展에 크게 寄與할 수 있다는 것이고

② 그 內容은 技術士 資格取得은 國家技術資格 法에서 分離하게 하고, 技術士業務는 個人技術用 役業務로 限定해서 技術士를 活用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陳情書는 아직 그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바. 技術士制度의 研究開發依賴

1988년에는 韓國產業開發研究院(KID)에 “技術士需給展望과 技術制度運營의 合理化方案 研究”로 因해서 國家技術士法 制定에 관한 建議을 1989. 9에 提出했으며 그 要旨은

① 優秀科學技術人力을 確保하고 技術士制度를 活性化시킴으로서 產業發展을 期待하고

② 技術士專門法이 制定되어야 技術人力管理의 合理化와 活性化가 이루어질 수 있는 點으로 해서 總 60條를 立法提案했으나 역시 그 實效를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 技術士專門法 制定 推進

1989年度부터 本會에 技術士法 制定 推進特別 委員會를 設置하고 金圭泰會長이 委員長을 兼任해서 推進을 期待하고 前任 長官으로부터 技術士法 制定을 言約받기도 몇번 되풀이하고 있으나 長官의 交替에 따라 公約아닌 空約化가 되는 狀況은 前任會長때의 實情과도 비슷한 것으로 되어 가고 있다.

아. 海外 交流事業

韓日間의 技術士交流事業은 合同심포지움을

兼行하면서 1990年인 今年까지 20회라는 長壽關係를 유지해오고 있다. 기타 海外交流關係를 보면

① 1985 年 8월 科學萬國博覽會에 鄭炳瑛 團長外 21 명이 參加했고

② 1985. 3월에 歐洲 7個國 技術士會의 訪問과 産業視察을 許埴團長外 6 명이

③ 1986. 7월에는 地中 美洲 5個 地域의 技術士會 訪問과 産業視察이 許埴團長外 6 명이

④ 1988. 11월 中國 産業視察이 許埴團長外 12 명이 參加하고

⑤ 1989. 8월에는 蘇聯 및 東歐圈 4個國과의 技術交流와 産業視察을 金圭泰團長外 16 명이 參加했다.

자. 技術士會의 運營

① 第9代는 崔鍾浣會長이 就任(81. 3~83. 3)하고 副會長 3名(金慶植, 黃海龍, 許埴)에 常任 理事(鄭炳瑛) 歷任으로 理事가 32名과 監事 2 명이였다.

② 第10代(83. 3~85. 3)는 崔鍾浣會長이 留任 되고 副會長 3名(金慶植, 許埴, 鄭炳瑛)과 常任 理事에 李晉根 技術士가 就任했다.

이 때 長期間 事務局長으로 수고했던 文盛泰氏의 辭任으로 지금의 鄭虎溶氏가 새로 任命된 것이다. 이 무렵의 年間豫算은 5~6천만원이었다.

③ 第11代(85. 3~87. 3)는 金慶植會長의 就任과 副會長(許埴, 崔錫煥, 金仁圭)에 常任 理事는 金安基 技術士가 되고 理事 33名에 監事 2 명이였다.

④ 第12代(87. 3~89. 3)에는 金慶植會長 留任 이고 副會長(許埴, 鄭炳瑛, 李東鎭)이고 常任 理事는 李康鎬 技術士로 바뀌었다.

⑤ 第13代(89. 3~91. 3)인 現在는 金圭泰會長의 就任과 副會長(李東鎭, 閔壽泓, 鄭炳瑛)이고 常任 理事는 두지 않기로 했으며 年間豫算規模는 1億 6千만원으로 伸長되었다.